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4. 6. 10 선고 2023가단34461 판결 [건물명도 등]

전 문

원 고 A

피 고 B

변 론 종 결 2024. 5. 20.

판 결 선 고 2024. 6. 10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,
가. 별지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,
나. 2022. 12. 7.부터 위 인도일까지 월 420,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2. 소송비용은
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.
2. 적용법조: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
판사 김승곤

별지